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4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인제,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칠성,
서준오, 송도호, 왕정순,
이병도,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개별산업 및 경제민주화 · 공정경제 ·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지역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지역경제협의회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기업지원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력 및 소통 촉진, 서울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계획 제시 등을 위한 기능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역경제 주체간 협력 및 서울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계획을 심의 ·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경제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혁신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시·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경영, 경제, 통계 등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시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 기업·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및 각 위원에게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구성 및 운영)에 신설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구성 및 운영)

나. 전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혁신경제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혁신경제위원회 위원 중 5명은 공무원(당연직)으로 참석수당 산정 시 제외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4,500천원(연평균 4,9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3조	4,900	4,900	4,900	4,900	4,900	24,500
	소계(a)	4,900	4,900	4,900	4,900	4,900	24,5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4,900	4,900	4,900	4,900	4,900	24,500

4. 덧붙이는 의견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구성 및 운영)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24,500천원(연평균 4,9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3조	4,900	4,900	4,900	4,900	4,900	24,500
	소계(a)	4,900	4,900	4,900	4,900	4,900	24,5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4,900	4,900	4,900	4,900	4,900	24,500

- 혁신경제위원회 = 24,50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경비

= 20,000천원 + 4,500천원

- 참석수당 = 20,000천원

= 수당단가 × 지급인원 × 연2회 × 5년

= 200천원 × 10명 × 2회 × 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공무원(당연직) 5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4,500천원

= 경비단가 × 지급인원 × 연2회 × 5년

= 30천원 × 15명 × 2회 × 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